

2022년 하반기 시행 · 개정 노동법 주요내용

2022. 07. 04.



NO	시행일자	구분	주요 내용	비고 (위반 시 벌칙 등)
1	'22.07.12.	퇴직연금 (DC·IRP) 사전지정 운용 제도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확정기여형(DC형)퇴직연금제도·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에서 가입자(근로자)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임. •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(퇴직연금규약 반영) 도입하고,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됨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'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(2021.12.9)' 참조.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1조3, 제21조3, 제21조4 신설
2	'22.08.18.	휴게시설 설치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2.08.18.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•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*의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을 포함한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) *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전화상담원, 돌봄 서비스종사원, 텔레마케터, 배달원,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,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• 고용노동부령**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의 설치,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 *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[별표 21의2] 신설조항 참고 (입법예고 중)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8조의2 신설 ·휴게시설 미설 치 → 1500만원이하 과태료 설치기준 미준수 → 1000만원이하 과태료

NO	시행일자	구분	주요 내용	비고 (위반 시 벌칙 등)
3	'22.12.11.	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,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- 종전에는 시행령으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 대한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 원칙만 규정하였을 뿐 선출투표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 부재 •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•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- 종전에는 시행령으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원선거인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재 	<p>·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개정</p>